

## 행정기관 참고용

동 안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후속조치인 과태료 부과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동 안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업무 시, 당시 행정명령 발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 제2판 -

2020. 11.



중앙방역대책본부

## 목 차

I. 개요 .....	3
1. 추진 배경 .....	3
2. 법적 근거 .....	3
3. 참고 및 유의사항 .....	4
II. 행정명령 관련 .....	5
1.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권자 .....	5
III.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기준 .....	5
1.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	5
2.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9
3. 과태료 금액 .....	10
IV. 지도 점검 및 단속절차 .....	11
1. 지도 점검 및 단속 .....	11
2.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 .....	11
3. 과태료 부과 시행일 .....	15
V. 협조사항 .....	15
▷ 블임 ◁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16
2. 과태료 부과 관련 FAQ .....	18
3.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	27
4.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28
5.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29

### ① 추진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이하 “법”으로 기재)」 개정('20.8.12 개정, 10.13 시행)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함
  - 또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 안내서를 마련함

### ② 법적 근거

- 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 \* 개정 및 시행 '20.8.12, 추가 '20.9.29. 개정(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포함)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생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시행 '20.10.13)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 ① (생략)
-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3 참고 및 유의사항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시 명확한 근거법령 명시 필요

- 운송수단(대중교통)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로, 그 외에는 지자체별 시설·장소를 특정하여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sup>\*</sup>에 따른 방역지침의 일환임을 명시하여 발령 필요

\* 제2호의2 방역지침 위반 관리자·운영자에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가능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는 경우는 법 제49조 제1항제2호의4로 발령 필요

\* 제2호의4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자는 과태료(10만원 이하) 부과

- 기존 법 제49조제1항제2호 집합금지·제한 명령 시 포함된 마스크 착용 의무지침은 삭제하거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로 신규 발령 필요

\* 기존 제2호는 집합금지·제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벌금 300만원)로만 진행,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이중처벌 문제 해소

## II

## 행정명령 관련

### ①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권자

-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위 조항의 “시·도지사” 등 약칭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②항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이하생략)

- (과태료부과권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명령기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역(시설·장소) 및 기간 등을 제한할 필요

## III

##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기준

### ①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 ❖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2020.11.1.)” 발표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 1단계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종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 1.5단계 >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 2.5단계,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행정기관 참고용

## ① 시설·장소 등

※ 다음을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삭제 불가)

-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m<sup>2</sup>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sup>2</sup>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입소자 및 관리·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행정기관 참고용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 1.5단계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sup>\*</sup>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는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sup>\*</sup>를 의미함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안)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관련

관리자·운영자 지침	이용자 지침
▶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관련

이용자 지침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관련

- ○○시 ○○구 지역 방문자는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까지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 외 핵심방역수칙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참조

### ③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식약처 권고사항(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④ 착용법 관련

-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②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참고용

## ③ 과태료 금액

### ①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법적 근거>

- 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시행 '20.10.13)

### ②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 1차 위반 시 예시

순번	예시	행정명령	위반 내용	운영자 (또는 관리자)	이용자
1	카페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제2호의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과태료 150만원	과태료 10만원
2	약국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제2호의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과태료 부과 없음	과태료 10만원
3	500인 이상 행사	해당 장소 방역수칙 준수 명령(제2호의2)	관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관리자 운영·관리 소홀	과태료 150만원	관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4	대중 교통	해당 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3)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 ③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① 지도점검 및 단속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지도·점검)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②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

#### ① 위반행위 적발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 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 ②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안내
- 단속 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 ③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사전통지서 추후 발송)

-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확인

## 행정기관 참고용

-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요청에 불응하며,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112 신고)
  - \* 지역 내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위반행위 확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에서 감경됨을 안내

**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포함 사항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의견 제출 방법 및 후속조치 >

1. 처분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2.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함
3.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4.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④ 과태료 부과 통지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
  -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과태료 처분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 송달
- ※ 처분통지서의 수령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http://epost.go.kr>)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확인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
-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공시송달기간  
(14일)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포함 사항 >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관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감경 사항 >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10.,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 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후속조치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 상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
-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  
※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 ③ 과태료 부과 시행일

- 행정명령 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을 2020.11.13.(금) 0시 부터로 명시
  - \*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해 법 시행 후 1개월의 계도기간 부여(~'20.11.12)

V

### 협조사항

- (협조사항)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 <sup>①</sup>근거법령, <sup>②</sup>시설·장소, <sup>③</sup>마스크의 종류, <sup>④</sup>착용법, <sup>⑤</sup>시행일을 포함하여 행정명령 재발령 필요

## 불임 1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기관 참고용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150	3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 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10

## 불임 2

##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 다음 FAQ는 동 안내서 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대상 장소, 행정명령(안), 마스크 종류, 착용법, 예외대상 및 예외상황 등)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 행정명령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음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 관리시설(중대본 발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함
  -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됨
- 다만,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

## 행정기관 참고용

Q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Q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
  -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Q5.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 행정기관 참고용

Q6.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7.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8.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
  -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 행정기관 참고용

Q9.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

Q10.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하나요?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Q11.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됨
  -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2.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Q13.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Q14.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 행정기관 참고용

Q15.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차는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Q16.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함
  -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7.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나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

Q18.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2

### 지도 · 단속 관련 [대국민용]

Q1.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Q2.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Q3.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 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Q4.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3

### 지도 · 단속 관련 [단속기관 참고용]

Q1. 계도기간은 반드시 1개월('20.11.12일까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 계도기간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 단속 행정청의 행정질차상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1개월로 협의·결정한 사항임

- 전국적인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하여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되, 이후 기간 연장 등은 행정명령권자의 권한으로 조정 가능함

## 행정기관 참고용

Q2.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 할 수 있나요?

-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마땅함

Q3. 단속 시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음
  -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폭행·협박 등 단속 방해 시 신속히 경찰관이 출동 할 수 있도록(112 신고) 사전 협조체계 마련이 필요함

Q4.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임
  - 신고 또는 제보 창구 운영 여부는 향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속 주체인 지자체장이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 불임 3

##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2020.11월 안내서 2판 기준]

###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 (실외) ①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붙임 4

##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2020.11월 안내서 2판 기준]

- 마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①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 (실내)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 (기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파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모이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클럽·카페,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li><li>•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li><li>•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li></ul>
예외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li><li>•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li><li>•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li><li>•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li><li>•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li><li>•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li><li>•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li><li>•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li><li>•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li><li>•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li></ul>

## 불임 5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KF94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이상 마스크**

-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sup>①</sup>과 기저질환자<sup>②</sup>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더운 여름철·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

①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②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미세입자 차단

호흡 용이성 ↗

**KF94**

**KF80**

비말  
차단용  
수술용

**KF94**

**KF80**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착용 전  
깨끗이 손 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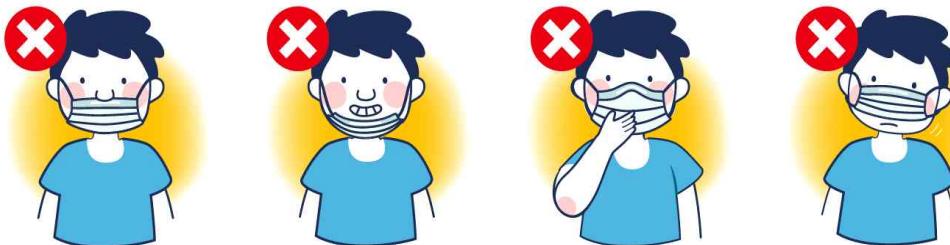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



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



##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면 안돼요!



입만 가리는 착용

턱에 걸치는 착용

곁을 만지는 행위

코만 가리는 착용

-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

### 마스크 선택법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 마스크 폐기법



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